

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- 524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2 - 296호(2022. 6. 3.)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기본 사항

- 인정번호: 제13호
- 상품명: 내리고 승강식피난기
- 대체시설 형식: 탈출형 대체시설
- 인정업체 및 대표자: (주)아세아방재(대표자: 나관주)
- 공장소재지: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
- 유효기간: 2025년 6월 2일까지

2. 변경 사항

내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. 신제품 성능인증에 따른 추가	○ 기존 제품 - 승강 20-2-2(덮개형)	○ 추가 제품 - 승강 22-2(덮개형, 비덮개형) - 승강 24-1(덮개형, 비덮개형)	변경 인정신청서 내 변경사항 참고
2. 건축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시방서 부분 수정	○ 관련 법령 ○ 용어설명 등 - (기존) 피난발코니 - (기존) 프레임공법	○ 관련 법령 - (추가)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 ○ 용어설명등 - (변경) 대체시설 발코니 - (삭제) 프레임공법	
3. 공장 주소 오기에 따른 수정 변경	○ 공장소재지 - (기존) 경기도 화성시 양남면 은행나무로 179	○ 공장소재지 - (변경)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	

3. 기타 사항

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(<http://www.molit.go.kr>)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